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7. 20 선고 2021가단10074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5. 18 선고 2021나30988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7. 20 선고 2021가단100749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21. 6. 22.

판결선고 2021. 7. 20.

주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를 B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단으로 한다.

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년부터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한

소유권이전등기 말소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민사소송에서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,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게 되므로,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(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만으로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청구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[원고가 2021. 6. 10.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선행하여 보더라도, 강제경매는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이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신적 효과가 있고, 집행채권의 부존재·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흠은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바, 원고 소유였던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F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, 원고가 집행채권 부존재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모두 이유 없다]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손혜정